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8. 30(수)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11
제출일자	2023. 8. 17.
회부일자	2023. 8. 2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선희 의원 외 15명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안 제4조 및 제5조)

-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대행하거나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됨.

나.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안 제6조)

-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대행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위탁·대행의 도의회 동의(안 제7조)

- 도지사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라. 수탁·대행기관의 재위탁 등 금지(안 제12조)

마. 정산 등(안 제16조)

-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함.
- 도지사는 매년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4.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나. 「지방공기업법」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마. 「지방재정법」

5.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6. 관련부서 협의

가. 법제심사: 불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7.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행정능률 향상”만을 규정한 것보다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임
- 안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는 사무 위탁 또는 대행업무의 적정성 검토기준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7호 “책임행정의 보장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보다 더 강화된 검토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는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심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위원회 난립 해소는 물론 공공기관 소관 부서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의회 동의)는 의회 동의를 예외 규정과 재위탁·재대행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 등을 규정함
- 안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기준)는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시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호에서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포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이는 향후 시행규칙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2조(수탁·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는 수탁·대행기관의 재위탁·재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수탁·대행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3조(경비의 부담 등)는 자금집행계획의 사전 제출, 집행 중 변경사유 발생시 도지사 승인을 받을 의무, 규정 위반시 반납의무를 규정하여 경비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함
- 안 제16조(정산 및 평가)는 위탁·대행사무 종료시 “지체 없이” 정산할 의무와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서 활용케 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다만 본 조례안 제16조제1항은 정산에 관한 의무를 단순히 규정하였으나,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서 정산에 관한 세부 절차, 지침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토보고 중 단서내용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회계연도 종료 또는 목적사업 종료시 2개월 내 정산보고
- 안 제19조(처리상황의 감사)는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확보를 위해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할 것을 규정하여 엄격한 관리 기준을 수립함. 이는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18조(지도·감독)에 항을 추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임

- 이와 관련, 본 조례안에서는 제1조(목적)에서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규정하였고,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제7호에서는 “책임행정의 보장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제3호에서는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규정하는 등 수탁·대행기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대행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기준으로 2020년 301건(1,358억원), 2021년 350건(1,897억원), 2022년 393건(2,16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이 더욱 요구되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행정능률성은 물론 책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관련 조례 제정 시·도 현황(5개) : 대구, 부산, 충남, 전북, 경남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대행사업 예산편성 현황>

회계연도	계	국고보조	자체사업	의회동의 대상 (3억원 이상, 자체)
2020	337건 7,820억원	36건 6,462억원	301건 1,358억원	102건 1,175억원
2021	395건 8,728억원	45건 6,831억원	350건 1,897억원	116건 1,702억원
2022	444건 9,931억원	51건 7,765억원	393건 2,166억원	125건 1,922억원